2025년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중·소 농식품기업 역량강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2025년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 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전주시장

① 사업 목적

- 중·소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O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조·가공식품기업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② 지원 근거 및 규정

- O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및 제50조
- O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O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③ 사업개요

O 사 업 명: 2025년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O 사업기간 : 2025. 3. ~ 11.

O 사 업 량 : 5개소

○ 총사업비 : 70,313천원(시비 56,250 자담 14,063)

- 재원비율 : 시비 80%, 자담 20%

O 사업대상 : 전주시에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

○ 지원규모 : 개소당 14,063천원 이내(자부담 20%)

O 사업내용 :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중소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

4 세부내용

○ 지원내용 :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중소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

분 야	세부 사업내용
①상품기반 조성	제품 지적재산권 권리화 국·내외 농식품 인증 및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브랜드 개발(CI/BI) 제품 개발·개선 및 시제품 제작
②기업역량 강화	전문컨설팅(식품 등 표시, 마케팅, 경영·기술 등)
③마케팅 및 판로확대	국내 물류 운송비 및 수출물류비(샘플발송) 지원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부스임차, 장치임대료) 매체광고(TV, 잡지, 온라인), 제품사진 촬영비,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등)

※ 사업비 한도 내 3개분야 세부 사업내용에서 농식품기업이 자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후 정산

O 지원자격

-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 운영실적 2년 이상 농식품기업
- 자부담 확보

【선정기준(100점기준)】

- ① 사업계획 타당성(20점), ② 지역농산물 활용비중(20점), ③ 기업운영실적(20점),
- ④ 운영형태(20점), ⑤ 보조사업 지원여부(20점)
 - 1순위) 전주산 또는 도내산(국내산) 농산물 활용 식품제조가공업소

- 2순위)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그간 보조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업체
- 3순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식품제조가공업소
- 4순위) 기타 식품제조가공업소
 - ※ 우선지원 기준 : 동점 시 위 순위별로 지원

【지원 제한대상】

- 최근 3년이내('21~'23년)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 * 관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북도 전주시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최근 5년이내('19~'23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위반한 기업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기업

농업법인 지원요건

- ①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 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5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5. 3. 12.(수) ~ 3. 31.(월)

○ 접수기간 : 2024. 3. 17.(월) ~ 3. 31.(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방문 제출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팀(063-281-6736)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 담당자 이메일 : ward5421@korea.kr ※ 이메일 접수 제출시 확인 전화 필수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순서에 따라 증빙서류 편철 후 제출

연번	신 청 서 류	비고
1	사업신청서(직인 날인)	서식 제1호
2	사업계획서	서식 제2호
3	전주산 및 도내산(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및 세부내역(2024년도) - 증빙 서류(구매내역 등) 첨부	서식 제3호
4	보조사업 이력서	서식 제4호
5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서식 제5호
6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7	탄소중립 실천서약서	서식 제7호
8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 농업회사법인은 출자금 및 농업인의 출자지분 확인 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22~'23년)	해당 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10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필수
11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디자인 개발 대상 제품)	필수
1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3~'24년) 1부	필수
13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비교견적,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필수
14	자부담 증빙자료(자부담금액 입금된 통장사본)	필수
1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필수

6 사업추진 일정

*여건에 따라 추후 일정 변경 가능



1) 사업신청단계

Λ

○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지침 수립 및 사업공모

보조사업자

- O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자료 참조
 - 농식품산업과 사전문의(지원 가능여부 및 발생비용 등) 후 신청서 제출

2) 사업선정단계

^|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평가심의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
- **〈 1단계**: 서류평가 **〉** *심사평가표 준하여 평가
- O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여건 검토
 - 서류평가 결과 자격요건 충족 시 심의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 : 심의평가 >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평가
 - 사업의 필요성,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등

3) 세부계획 수립

Ŋ

- O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알림(시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안내

보조사업자

- 공모선정 시 제출한 사업목적·계획에 부합하게 세부시행계획서(월별 추진계획 포함)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O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권고
- O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
-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4) 시행단계

۸

- O 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안내
 - 시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 지시
 - 사업목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O 세부시행계획 변경 시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 (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첨부)
- O 시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보 조 사 업 자

-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본 지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 추진
- O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변경 불가

5) 자금집행단계

보조사업자

○ <u>우선적으로 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u>,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증빙자료 포함)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지급신청

Λ

O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한 후에 총 사업비에 대한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6) 사후관리

Λ

O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은 부당한 사항을 알았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7 유의사항

- O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화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선정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지원사업자 선정 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화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O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사업완료 시 포장 및 패키지 샘플 제작 후 제출 필수

2025년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 사업 기본요건 점검표

[전주시 ㅇㅇㅇ기업]

항 목	내 용	역 ()	부 ,X)	비고
	< 농업법인 >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입니까? * 부동산인 경우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만 인정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0.971
	-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 단체임을 확인 하였습니까?			등록확인서 제출(5인)
자 격 요	-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u>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의 출자지분이</u> <u>10% 이상</u> 입니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고 건 -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재무상태표 등
	< 공통 >			
	-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업체입니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 운영실적이 2년 이상입니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등
	- 자부담 확보 여부?			은행잔고 확인서 등
사업비 산 출 검 토	-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동일업종 타인견적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까?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 01	- 최근 3년 이내('22~'24년) 관련사업 [*] 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지원 제한 기준	- 최근 5년 이내('20~'24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 산 처분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입니까?			납세증명서

[※] 노란색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심의평가 대상자에서 제외

2025년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 사업 심 사 평 가 표(안)

심 사 평 가 배 점 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① 사업계획(구체성,타당성 등)· 사업비 산출 적합성 (20점)	① 우수 ② 보통 ③ 다소 미흡	20 15 10				
② 전주산또는 도내산 (국내산) 농산물 활용 비중 (20점)	① 100%이상 ② 70%이상 ~100%미만 ③ 50%이상~ 70%미만 ④ 50%미만	20 15 10 5				
③ 기업운영실적 (20점)	① 2년이상~5년미만 ② 5년이상~10년미만 ③ 10년이상	20 15 10				
4 운영형태 (20점)	① 농업법인 식품제조가공업소 ②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소	20 10				
5 지원사업 지원여부 (20점)	① 지원 실적 없는 기업 ② 기 지원받은 이력 있는 기업	20 10				
계		100				
<u>※ 선정제외대상</u>	 ○ 최근 3년이내('22년~'24년)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 있는 기업 (관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북도, 전주시 지원사업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최근 5년이내('20년~'24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한 기업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기업 					
※ 동점시 우선순위	1순위) 전주산 또는 도내산(국내석 2순위)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그긴 3순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4순위) 기타 식품제조가공업소	보조사업을 한번	도 지원받지 못			

2025년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만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등록변	인 H호					
신	대 표 자 주 소					전화변		사무실 핸드폰				
신청업체	- 주 요 생산품목					제조역		<u> </u>	· •	m²		
						면	적	_				
현 황	사업체구분	농·	업법인 □	법 인	[□ 개인 -	사업>	자 				
O	설 립 일 (영업등록일기준)	년	월 일	매출	·액	(*23)		백만원	, (′24	4)	백민	<u></u> 안원
	ઢ નો∫ ન ો	가 어 기.	주소 :									
	소 재 지	사업장	전화 :		이머]일 :			상	근직원수	- :	
	사업내용	0										
싀		세부사업명				사업비(단위: 천원)						
신청내용	세부				계			시비		자	부담	
용	사업내역	계										
중복	복지원여부	최근 5 : □	년간 동일 또는 해당없음 / □	- 동일 또 해당	는 유	사사업 :	지원œ	부				
			량강화 패키지 개인정보를 처						관련]하여 A	 	상자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인)												
전주시장 귀하												
〈첨투	^브 서류>											
] 시 · 서식											
○ 증빙서류[지침 ⑤ 신청방법(신청서류)] 참조												

< 서식 2 - 사업계획서 >

2025년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 사업계획서

I. 사업체 현황

업 체 명		사 업 자	
(대표자)	()	등록번호	
사업체 구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등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업 종	*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	주요생산품목	
세금체납 여 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Ⅱ. 사업추진계획

○ 지원 내용

분 야	세부 사업내용
	제품 지적재산권 권리화
①상품기반 조성	국·내외 농식품 인증 및 품질인증
①성품기인 조성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브랜드 개발(CI/BI)
	제품 개발·개선 및 시제품 제작
②기업역량 강화	전문컨설팅(식품 등 표시, 마케팅, 경영·기술 등)
	국내 물류 운송비 및 수출물류비(샘플발송) 지원
③마케팅 및 판로확대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부스임차, 장치임대료)
영미계8 및 근도됩대	매체광고(TV, 잡지, 온라인), 제품사진 촬영비,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등)

○ 사업계획 *(구체적 자율작성)*

<사업목적 및 필요성>		

<현재 '	업체	상황>				

<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25. . ~ .

○ 사업착수/완료 : 2025. . / 2025. .

○ 추진일정

	1/4분기	2/4	3/4	4/4
추진일정	(예시)	납품업체	사업추진	사업완료보고
	사업신청(00월)	계약체결(00월)	(00~00월)	(00월)

※ 만약 포장재 디자인 개발 시 현재 포장재 디자인 사진 첨부 필요

※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시 참가계획 자세히 작성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인력 채용 및 매출액 향상 등

Ⅲ.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위	사업	비(단위 : 기	천원)	비고
세구자합내극	(१६४) ध्र		계	시비	자부담	비포
계						

철 부 업체 사업장 기본 자료

사업장 외부 전경 사	 진
제조업소 내부 사진	
주요 생산제품 사진	

도내산 및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 ■ 작성일 : 2025. . .

■ 작성자 : *업체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구매기간 : 2024년

■ 품목별구매내역(총괄)

olt:	변도 품목/ 구매형태		물 량(kg)				금액(백만원)				비고
민도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비끄
		계	00 (100%)	00 (50%)	00 (40%)	00 (10%)					
2024	0개 품목	일반 매입	00 (80%)	00	00	00					
		계약 재배	00 (20%)	00	00	00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전주산 구매실적 있을 시 서식 변경하여 작성 가능

도내산 및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 세부내역

۸۱	м п	구매처	구매	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연도	품 목		물 량(kg)	금액 (천만원)	(담당자명, 전화번호)
2024					
2024					
2024					
2024					
합 계					

- ※ 1.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 2. 품목별, 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상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인)
-----------	-----

전주시장 귀하

보조사업 이력서 (최근 5년간)

1. 신청자 인적사항 (20 ·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② 사업자등록번호	(- 1 d	0 1	- 01)
· 회사:기타명칭					(등록 년월일)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_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업보조사업 지원사항('20~ '24년)

⑥지원받은년도	⑥ 지원받은 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m²)	⑨ 총사업비(천원)	①보 조금 (천원)
년					국비 도비 시군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서식 5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워내용

사 업 명	2025년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사 업 비	금 14,063,000원 (시비 11,250,000, 자부담 2,813,000)		
사업내용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시·군비(자부담 포함)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수혜자, 시공 및 납품업체 등과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기기, 장비, 지적재산권 등 일체를 사업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주시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 또는 보조사업 성과를 3년간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주시 「2025년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5. . .

보조사업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전주시장 귀하

2025년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2. 제28조의4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2.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3. 제28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 제16조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17조 또는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 .

보조사업자 : 업체명 대표자 (인)

2025년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탄소중립 실천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물품 구매 시녹색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하며 **친환경 착한소비^{*}를 생활화**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귀 전주시에서 지향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 환경(E)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S) 등 ESG 가치를 고려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

【 녹색제품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

◈ 제품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의 배출 및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저감되는 제품

구분	환경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
표시	친환경 _{환경부}	SEASON TOOLS AND A SEASON TO SEASON	Good Recycled
운영목적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우수한 제품 인증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조한 제품 가운데
	(KS 품질 이상 만족)	줄인 제품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
대상품목	사무기기, 가전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폐지, 폐고무,
	생활용품 등 165개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제품 군	제외한 모든 제품	11개 분야
인증제품수	4,487개 업체 17,859개 제품	87개 업체 256개 제품	224개 업체 250개 품목
	('21.9월말 기준)	('21.9월말 기준)	('21.10월초 기준)
인증기준	환경표지 홈페이지 참조	「저탄소제품 기준」고시 참조	GR제품정보시스템 참조
인증기관	환경부/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홈페이지	greenproduct.go.kr	edp.or.kr	buygr.or.kr

2025. . .

보조사업자 : 업체명 대표자 (인)